

의안번호	2218632
의 퇴 인	김상훈 의원
회 답 일	2026.06.15.
추계번호	26E235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1조의28(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) 신설, 안 제129조의2(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) 등	○ (대상) 19세 미만 거주자 - 계좌 보유자가 19세가 되는 날부터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전환¹⁾ -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미대상 ○ (요건) 1인 1계좌 ○ (계좌 유형) 신탁형·일임형·투자중개형 ○ (운용자산) 국내·외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²⁾ ○ (납입한도) 연간 360만원, 총 6,840만원 ○ (과세특례) 19세가 되는 날까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- 손익과 손실을 통산 - 거주자가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○ (중도해지) 19세 이전 중도해지(계좌 보유자의 사망·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) 시 과세특례 적용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 - 납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봄	—

주: 1) 총 납입한도는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18)의 납입한도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

2)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해당(단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을 거친 외국 집합투자업자·투자회사 등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함)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1조의28(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), 안 제129조의2(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·배당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91조의26 신설 등)
-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가입 인원, 1인당 납입금액 및 비과세 적용대상 순소득 규모(투자 수익률 수준), 가입 기간 및 해지 연령(시점)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 상황에서 이를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